##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63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이병훈·유정주·김승원

박완주 • 이상헌 • 윤재갑

신영대 · 이장섭 · 민형배

김철민 · 전혜숙 · 박 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

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 조의2제4항). 법률 제 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지원할"을 "출연하거나 지원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 ③ (생 략)	설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4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u>지원할</u> 수 있다.	출연하거나 지원할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